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 구 분 | 보험종목의 명칭 |
|-------|----------------------------|
| 주 계 약 | 무배당 알리안츠희망사랑보험 |
| 종속 특약 |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종합입원형/종합통원형) |
| | 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 |
| |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 |
| |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I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 0세 ~ 13세

※ 다만,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 및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I: 20세 ~ 97세

3. 보험기간

- 3년만기

4.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일시납

5.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당 1,000만원

-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종합입원형: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약관 제3조(담보종목 별 보상내용) (1)종

합입원 제1항에서 정한 입원의료비의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지급한도(5,000만원)

종합통원형: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약관 제3조(담보종목 별 보상내용) (2)종합통원 제1항에서 정한 통원의료비의 하나의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당 지급한도(30만원)

- 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 특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당 1,000만원
-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 특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당 500만원
-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I: 특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1인당 250만원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7. 기타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구 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
| 무배당 알리안츠희망사랑보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한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종합입원형/종합통원형) | |
| 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 | |
|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 |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직계존속 중 계약자가 지정한 자 |
| 무배당 희망사랑특약 II | |

나. 계약자

- 계약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함

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

의 요청 및 동의를 있어야 함

라. 보험료 납입의 주체

- 이 계약의 보험료는 소액보험사업의 특성상,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한함)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회사는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1)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를(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를(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3)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바. 기타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관한 사항(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한함)

(1) 다수보험에 관한 사항

(가) 다수보험에 대한 가입 안내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나) 다수보험의 처리

-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③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한다.
-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한다.
- 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
|---|
| $\begin{aligned} &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 = \text{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quad \times \frac{\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end{aligned}$ |
|---|

- ④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2) 보험계약청약서에 추가할 사항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청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 (가) 현재 의료기관에 검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예약(단순 종합검진은 제외) 여부
- (나) 현재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포함)에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의 가입여부

(3) 기타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 특약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사. 특약 부가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은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여 판매한다. 다만,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을 의무부가하여 판매한다.

- 무배당 희망사랑특약Ⅱ은 무배당 희망사랑특약Ⅰ에 의무적으로 부가하여 판매한다.

아. 보험상품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및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은 단체보험에 준하여 적용함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제2항 제3호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릴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계약자인 휴면예금관리재단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 계약자가 원할 경우 또는 판매채널별로 상품명칭 앞에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차. 기타 보험수리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경우 보험료 산출시 특약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한다.
- 무배당 희망사랑특약Ⅱ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시 특약보험가입금액 250만원 기준으로 원단위에서 절사하여 처리한다.